

01 고객 기본 정보

가 입 자 명	성 명	인 또는 서명	생 년 월 일 (주민번호 앞 6자리)	년 월 일
주 소	<input type="checkbox"/> 자택	(우 -)		
연 락 처	<input type="checkbox"/> 휴대폰			
이 메 일				

02 연금 지급 정보

개 인 형 I R P 계 좌 번 호				
지 급 사 유	<input type="checkbox"/> 연금지급			
연 금 지 급 액	(세전)	원	(단, 연금수령한도 내 신청 가능)	
연 금 수 령 계 좌	<input type="checkbox"/> 기 등록 계좌			
	<input type="checkbox"/> 새로 수령할 계좌	계좌번호 : (신한)	예금주 :	
연 금 수 령 한 도 초 과 시 기 재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하여 자금원천에 따라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 듣고 신청합니다.			
고객명 : _____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 연금 지급을 위한 운용상품의 매도순서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상품유형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합니다.
- 연금수령은 본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가능하며 연금수령일자가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 연금전환 후 연금계좌인출순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조의3에 따라 지급됩니다. ① 과세제외금액 ② 이연퇴직소득 ③ 기타소득
- 사적 연금소득금액이 연간 1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명확인자	담당자	확인자





연금수령 개시(변경) 및 해지에 대한 안내사항

1. 연금지급은 연령 조건(만55세 이상)과 가입기간 조건(5년 경과)를 모두 충족해야 연금수령 개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는 연령조건만 충족하면 됨)
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연금소득자의 연금수령일 현재 연령 또는 소득 원천에 따라 차등해서 부과됩니다.

구분	만55세 이상 70세 미만	만70세 이상 80세 미만	만80세 이상
연금소득세율	5.5%	4.4%	3.3%

3.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 원천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소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구분	연금 수령	연금 외 수령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인출 (연금 외 수령)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가입자부담금(원금) (A)	비과세		
이연퇴직소득금액(B)	연금소득세 (이연퇴직소득세 70% ^{주1)})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이연퇴직소득세 70%)
세액 공제 받은 가입자부담금(원금)(C) / 운용수익(A+B+C)	연금소득세 (3~5%)	기타소득세	연금소득세 (3~5%)

주1) 실제 연금수령연차 10년 초과시 퇴직소득세율 x 60%

4. 연금수령한도는 매년 산출되며 $\frac{\text{연금계좌 평가액}^{\text{주1)}}}{(11 - \text{연금수령연차}^{\text{주2)})} \times 120\%$ 이내에서 연금수령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과세대상금액은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주1) 연금계좌 평가액 : 최초 1년은 연금수령개시신청일, 다음년도 부터는 매년 1월 1일 기준

주2) 연금수령연차 : 만55세 & 가입기간 5년을 충족하는 연도부터 1년차 적용.

단, 11년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를 산출하지 않으며, 수령하는 연금은 연금소득세 부과

